
입 법 정 보

2017-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5
2.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무부)	7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8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9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0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0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1
13.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3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4
1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5
18.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6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6
2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7
2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8
2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18
2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9
2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19
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20
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2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22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3
31.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3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4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4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6
3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8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28
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30
3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31
3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1
4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2
4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33
4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33
4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4
4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34
45.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5
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35
47.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6
4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36
4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37
50.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7
5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8
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9
5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0
5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0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1
5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41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3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3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43
6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3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44
6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5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45
6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46
6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6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5. 29. • 마감일자 : 2017. 7. 10.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29. • 마감일자 : 2017. 7. 10.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 4. 18.)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에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자 함
- 가. 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나.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월 제정·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항공기 소음 기준의 적용지역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현재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인 WECPNL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LdendB(A)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단위에 따른 항공기 소음한도를 제시하고자 함.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11.6.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변경
- 나.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개정 및 개정된 평가단위에 따른 소음한도 변경
 - 1)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를 LdendB(A)으로 함.
 - 2)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75LdendB(A)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61LdendB(A)로 한다.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6. 9.
-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 2016.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 1)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나.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 1)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재산업 발전자문위원회를 둠
 - 2)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0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라.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안 제12조)
 - 1)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교육운영조직, 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함
 - 2)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당해 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마.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3조)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7.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관한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공동농업 경영체 지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 및 공고(안 제4조의3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필요한 통지 관련 공고 절차 규정
-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의4 신설)
 - 경영체정보 직권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운영 가능
- 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삭제)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 및 지급제한기준 규정 삭제
-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안 제18조의2 신설)
 - 법인 및 단체의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 정보, 농산물 유통 및 소득 정보 등
 -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 분석·가공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 바. 공동농업경영체 변경절차(안 제18조의3 신설)
 - (변경절차) 등록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장관은 등록부를 변경하고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 통보
- 사. 공동농업경영체 사후관리(안 제18조의4 신설)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농업경영체의 요건 충족여부, 운영계획 이행여부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지자체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8.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의 조직을 공동농업 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한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절차, 정보등록, 지정취소, 사후관리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으로 근거법률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함(제4조~제7조 삭제)
 - 나. 공동경영의 면적과 참여 농업경영체 수(안 제21조의3 신설)
 - 공동경영 면적 50ha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수 25인 이상
 - 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 국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물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
 - 라. 지정절차(안 제21조의5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지정
 - 마. 변경등록 대상 경영정보(안 제21조의6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및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경영체의 운영계획·내부규약, 공동경영면적 및 참여 구성원
 - 바.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직권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신설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 자력취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나.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그 의미를 명확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

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13.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5. 30. • 마감일자 : 2017. 7. 10.

- 사이버대학의 교육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원격교육 외 양질의 교육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학원이 있는 사이버대학의 교사면적 적정화(안 제5조제2항)
사이버대학 부설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기준면적을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생 입학정원을 적용한 것과 같이 원생 교육을 위한 적절

- 한 규모인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수로 변경하여 적용
- 나. 학습관 운영제도 도입(안 제5조의 2 신설)
 - 원격교육 외 집합교육 및 실습 등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가 받은 교사 외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이버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다. 수익용기본재산 범위 및 수익률 개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범위에서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제외하는 등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산정방식을 변경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연간 3.5%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개정하여 연간 수익기준 현실화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4.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보완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법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안 제33조)
 - 국민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증 재발급을 무료화함.
-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보완(안 별표2)
 - 거짓작성 판단기준 중 가목과 나목을 재분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부실작성 판단기준 중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판단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동 분야의 부실 판단을 명확화함.
- 다.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개정(안 별표3)
 - 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후 만성적인 소규모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시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대면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견 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시공 운영시 환경영향이 큰 대형건축물 건축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지엽적 의미를 갖는 항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등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서면심의를 위한 요건 추가(안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

나. 민원처리기간 계산방식 변경(안 제9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간 계산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제외하도록 변경함.

다. 통보기간 계산방식 관련 단서 신설(안 제12조, 제38조)

통보기간의 경우에도 민원처리기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준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통보기간의 계산과 관련한 업무상 혼선을 방지함.

라. 주민의견 수렴 관련 승인기관장등의 역할 재정비(안 제37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이 관련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승

인기관장등의 절차 대행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정비함.

다. 사업규모 증가 판단의 기준시기를 조정(안 제45조)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 제 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시에서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로 변경하여 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바.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 별표1)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건강 항목으로, 일조장해 항목을 일조방해 빛공해 항목으로 개정하는 등 실효성이 낮거나 지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를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정비함.

사.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기준 도입 및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 추가(안 별표3)

1) 시공 운영과정에서 자연 및 인간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의 환경영향을 고려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이 포함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4.

○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검정 정지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사 중지 후 재착공 통보의무 명확화(안 제37조)

사업의 착공, 준공 및 중지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 후 다시 착공하는 경우의 통보의무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설치(안 제53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검토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56조의2, 제57조)

신고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함.

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당해 검정의 효력 명시(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발생가능한 혼선을 방지함.

바.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제48조에서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7조와 달리 제48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제48조 위반시에도 제37조 위반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간 벌칙의 비례성 문제를 해소함

1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0.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로 찰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찰벼의 유통관행 등을 감안하여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확대에 따라 매입할 수 자격 기준에 해외원조용 추가

양곡관리법 개정(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으로 양곡가공업 신고 수리 제도가 도입되고 신고수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

어 있는 관련 신고 서식 정비

밀가루 제분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분업 일부시설의 설치 예외규정을 마련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18.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0.
- 양곡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판매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정비(안 제10조)
 - 정부양곡 판매 용도를 가공품 개발용으로 구체화하고 해외원조용 추가
 - 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시장가격) 산출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 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수준 명시(안 제13조의3 신설)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0.
-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나. 우선지급금 정산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2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6. 15.
- 법령의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종전 업무주체별에서 수입인지 종류별로 변경토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0.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178호, 2017.3.21. 공포, 20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건설+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관련 용어를 변경함
- 나. 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제17조 제5항 신설)
건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수집하는 시설, 가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 대상에 공간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추가함
-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및 사업 확대(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4항 개정)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165만㎡ 이상 → 30만㎡ 이상 개발사업)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개발사업 외에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추가함

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심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인증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5. 31. • 마감일자 : 2017. 7. 10.

○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제도의 도입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용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양여”의 의미 명확화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2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6. 1. • 마감일자 : 2017. 7. 11.

○ 전자관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에 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내용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그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안 제11조3항)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함.
- 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동일화(안 제11조제4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

24. 행정자치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6. 1. • 마감일자 : 2017. 6. 7.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이 이북5도(별표9)와 이북5도위원회(별표9의2)로 혼재되어 명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북5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5. 화재로 인한 제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1. • 마감일자 : 2017. 7. 11.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 나. 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 다. 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 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

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1. • 마감일자 : 2017. 7. 11.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특수건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특약부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의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하여 명확히 함.
- 나. 보험가입 기준일 설정(안 제3조)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특수건물 관계인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최초로 안전점검 통지를 받은 날을 보험 가입 기준일로 정함.
- 다.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규정(안 제5조, 별표1, 별표2)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함.

라. 안전점검 운영 개선(안 제12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마. 안전점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2조의2)

안전점검 통지에 이의가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6. 7.
-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 및 방사선 의료장비·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두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현행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시조직 기한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 (~' 19.6.30)
- 나. 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6. 7.
- 신축·이전되는 성동구치소의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 사용하고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정시설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무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전문 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 사건 증가에 따른 보호관찰 전담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관제업무 수행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과 불법체류자 전담 조사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 체류민원 전담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보조기관의 순서를 직급 순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년과와 보호관찰과의 기구순서를 조정하고,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호과장의 간호조무원에 대한 근무사항 등을 간호과장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이관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담당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7. 12.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신고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농약 식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해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마련

나.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 제5항 신설)

1)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

다. 신고제 규정 합리화(안 제23조의2제4항 ~ 제5항, 안 제26조제6항 ~ 제7항, 안 제33조제3항 ~ 제4항, 안 제44조제5항 ~ 제6항, 안 제51조제3항 ~ 제4항 신설)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5. 19. • 마감일자 : 2017. 6. 8.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7항을 동법 제29조 제7항에 상향 규정(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문을 삭제

31.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7. 12.

○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신설,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

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1481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포상의 종류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기준과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삭제(현행 제6조 삭제)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7. 1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7. 12.

-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3, 제126조의2)
 - 1)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2)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업무 수준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안 제80조의7)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을 초래
 - 2)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이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함

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2. • 마감일자 : 2017. 7. 12.

○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과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며, 그 공표 기준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로 함

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 1)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나눔
- 2)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1)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보고대상 산업 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 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함
- 2)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

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안 제24조의2 내지 제 24조의4)

- 1)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함

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적 명시(안 제29조 제3항)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대상을 정함
- 2)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함

다. 업무정지에 같은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5조의 6, 별표4의 2)

1)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에 따른 구간별 업무정지 1일당과징금 금액에 업무정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구간별 총매출금액 간격에 비하여 1일당과징금 금액 간격이 작아 매출액이 적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형평에 반하는 역차별 발생

2) 이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총매출금액 구간별로 정한 1일 과징금 금액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1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3)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6. 12.

○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이동경로 파악 등을 위한 국가철새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타사광고 허용 및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금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다. 자사광고 연장 허가·신고 폐지 등(안 제10조 및 별표1)

1)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신고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라. 신소재·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의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30조)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바.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 정비(안 별표5, 별표7, 별표8)

1) 법률 개정으로 변경·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법률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7.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 중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 조정심의회 구성, 조정명령 등의 공고,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 인용 근거조항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적합업종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1조제7항제2호)
 -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 나.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3조의2)
 - * 제1항 및 제3항 : (현행) ‘법 제32조제5항 전단’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제1항제3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 다. 사업조정 명령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4조)
 - * (현행) ‘법 제33제1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및제2항’ (현행) ‘법 제32조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4항’
- 라.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과태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 * 제5호 : (현행)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8호 : (현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을 수정함(안 제28조)
 - * (현행)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상 근거 법조문 및 금액 변경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동조 제3항 제1호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동조 제3항 제2호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동조 제3항 제3호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동조 제2항, 부과금액 상향 (3백만원 → 1천만원)
- 법 제43조 제2항 → 동조 제1항

3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을 포괄적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간 연장을 승인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유형별 사업 등록절차와 사업등록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절차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쇄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사업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기반을 확충 (안 제2조제1항,

제2항)

4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17.3.21공포, ' 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령 연계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키는 등 탄소흡수원법시행령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안 제3조)
 - 나.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4조)
 - 다.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21조제1항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5조)
 - 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6조)
 - 마.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의무 삭제 및 간접조사 활용근거 신설(안 제11조)
 - 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신설 (안 제17조)
 - 사. 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삭제 등 (안 제20조, 안 제31조의2, 안제32조)
 - 아.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해 운영표준에 정할 사항의 명확화 (안 제24조)
 - 자. 산림탄소흡수량 보고시기 조정 (안 제25조)
 - 차.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근거마련 (안 제27조)
 - 카. 법률개정에 따라 법 제37조의 연계조문 정정(안 제31조)
 - 타.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정부부처명 현행화(안 제6조, 제22조, 제25

조)

4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6. 12.
- '17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직급이 상향된 운영정원의 일부를 환원하고, 과 명칭 현행화를 위해 정보활용지원팀의 총액인건비제 존속기간 만료 시 정보활용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보호지원과장 대신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분장하게 하며, 임기제공무원(성과평가정책과, 5급 1명)의 수를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검정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3항·제6조제 2항제1호·제18조의2·별표12·별표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5·제18조의6·제18조의7·제18조의8·제20조제7호·별표11·별표14·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삭제)
 - 1) ‘안전장치 부착확인’의 근거 규정 법 제12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검정시에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의 단속을 위한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4항 개정 및

제13조의1 신설)

1)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다. 검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 개선(안 제19조의2제4호 신설)

1)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요청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명확화

4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1항 개정)

1) 현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은 영 제5조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의 위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1) 단속행위 이행 및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집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임

다.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및 삭제(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개별기준” 개정)

4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6. 12.

-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 가능 직위를 조정하고, 사업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피아식별장비사업 및 전투합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45.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6. 5. • 마감일자 : 2017. 7. 17.

-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47. 애양수산물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애양수산물부)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22조제1항)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별지 1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35일에서 30일로 단축

4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대·중견기업과의 관계기업에서 탈피해도 차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관계기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확인시 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에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변경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9조, 안 제9조의2)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다. 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4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6. 12.
- 4 16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법에 따른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것임
- 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가(안 제2조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50.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함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4)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현행의 임기 규정으로는 교정공제회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과 그러지 않은 임원 간 차이를 둘 수 없으므로 임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 차이에 따라 임기를 차별화하여 교정공제회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하고, 교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운영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정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법은 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가 곤란하므로,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노력여하 및 역량에 따라 임기에 차별을 두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함

나.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함(안 제12 제3항)

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 2년 미만의 임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연임과 관련하여 역량을 평가하기에 그 기간이 부족하므로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다.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도입(안 제21조)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함

라.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용협동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조합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824호, 2017.0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2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7. • 마감일자 : 2017. 7. 17.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5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 ~ 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 ~ 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 내용 절차(안 제9조 ~ 제13조)

시 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 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 ~ 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 ~ 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 징수와 관련된 절차

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 관리 제공토록 함.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17.3.21, '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17.3.21, '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매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약 안전사용교육 기능을 농약등록 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 및 제재 등의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업무의 부실 우려로 위탁업무 대상 개선과제를 발굴·선정(국민안전처 16. 9. 29.)됨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교육 위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삭제)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7. 18.
-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 부실기재 및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 확대
모든 증권의 모집 매출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표시한 문서)를 투자자에게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권유시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도록 함
- 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연 10억원 미만으로 모집 매출(소액공모)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신용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6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6. 15.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5호) 기한 종료(2017.5.31.)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7-123호, 2017.5.31.시행)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편사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과서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려는 것임.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6. 8. • 마감일자 : 2017. 6. 15.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4장(실업급여에 관한 규정)과 제7장(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근로자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직 확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며,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

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6. 9. • 마감일자 : 2017. 7. 19.
-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선원대피처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6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6. 9. • 마감일자 : 2017. 7. 19.
-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모집광고는 일률적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양인 경우 광고비 과다지출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공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 시 표시하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 나. 분양 광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라. 분양계약서에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근거 신설